

결정요지

2013년 7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가1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선고날짜 2013.07.25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 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 부칙에 대한 반대의견은, 당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국가귀속결정의 위법성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제청법원이 판단할 것이므로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고, 위 부칙조항은 소급적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의 조부 이OO은 1910. 10. 7.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09. 5. 22. 이OO이 1921년경 취득한 OO시 소재 임야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위 임야 중 이OO의 상속인인 제청신청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0. 5. 31.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2. 18. 이OO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작위를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하였다.

○ 한편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함에 있어, 종전의 법률상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 부분을 삭제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새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산조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이에 제청신청인은 제청법원에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과 부칙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11. 12. 22.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 부칙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 부칙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친일재산귀속법에 정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된다. 그러므로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국가귀속결정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고,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1. 3. 31. 2008헌바141등 결정에서 친일재산을 소급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재산 귀속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친일세력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지위 자체로 친일세력의 형성?확대에 기여하고,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밖의 재산귀속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제청신청인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하여 그 재산이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친일재산귀속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작위를 거부? 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와 같이 친일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는 제외되는 점에서 친일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친일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와 비교하여 친일 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들을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면 국가귀속결정의 처분시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제청법원이 구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가귀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위법한 국가귀속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에 불과해 그 소송에서 위법성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청법원이 판단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청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보면 부칙조항은 종전 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결정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자는 것이다.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면 절차규정을 마련해서 새 처분을 할 기관을 신설하여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편의적으로 부칙조항의 신설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